

# [KNN 심의 가이드라인]

재정 2008.07.01

개정 2023.03.02

## [총칙]

### 가. 가이드라인 규정 및 목적

1. KNN 심의 가이드라인은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등 프로그램 심의와 관련한 상위법과 규정에 조응한 기준을 제시하며, 지역지상파 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6조,7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6조

제6조(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⑦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⑨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⑩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⑪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⑬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⑭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⑮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⑯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일반규정]

### 가. 공정성

#### 1. 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①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②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 3.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 5.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객관성

## 1. 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출처명시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통계 및 여론조사

① 통계조사(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는 제외한다)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일시
3. 조사기관·단체명
4. 조사방법
5. 표본오차
6. 질문내용
7. 응답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③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종료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가 종료된 후 방송하는 등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 4. 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 5. 보도형식의 표현

방송은 보도, 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이외에서 뉴스, 공지사향, 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보도프로그램 등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권리침해금지

#### 1. 사생활 보호

-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방송은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상품 등의 명칭·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명예훼손 금지

-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4. 인권 보호

-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 ① 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 6.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 ①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7. 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8. 공개금지

①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9. 범죄사건 보도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囚衣)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재난 등에 대한 방송

### 1.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① 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난·감염병등의 발생·진행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감염병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감염병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② 재난·감염병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병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가 재난·감염병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감염병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병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 2. 피해자의 안정

방송은 재난·감염병등의 피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3.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방송은 피해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해자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이 방송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2.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 마. 윤리적 수준

#### 1.생명의 존중

-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2 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3.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에 대한 표현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 3 건전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4 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양성평등

-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정보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7. 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 8. 법령의 준수

- ①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표절금지

방송은 국내외의 다른 작품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소재 및 표현기법

### 1.성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 2.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학적.피학적 묘사)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3.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4.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 5.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 4.범죄 및 약물묘사

- ①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자살묘사

- ①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은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6.재연.연출

- ①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에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허구의 소재를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했던 사건.사고가 아님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하거나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

며, 그 피해자·가해자 또는 당사자 등의 배역에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 7.성기, 성병 등의 표현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8.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 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9.의료행위 등

①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2.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3.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8.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② 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藥師)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10.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①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문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을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 어린이·청소년 보호

### 1.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 프로그램 참여나 출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출연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를 취해야 한다.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잘못된 흡연·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는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 아. 광고효과 등

### 1. 광고효과

①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

거나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이하 “상품명 등”이라 한다)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3. 상품명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여 노출하는 내용

② 방송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2.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예상수익, 사업전망, 관련 상품 등의 효능·효과 등을 보장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축소하는 내용

4.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관련 있는 특정기업의 상품 등에 부당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④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상품 등 또는 상품명 등의 노출이나 언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품 등을 의도성 없이 배경·소품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하는 내용
3. 법적 규정에 따른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4. 법적 규정에 따른 가상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 2. 안내·고지 자막

- ① 방송은 상품 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난·질병·세무 또는 선거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 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써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행사. 다만, 행사명·일시·장소 등 행사안내를 위한 고지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3. 사업자의 자사 직원채용·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
  4. 수도물·전기·가스 중단, 지역 공사안내, 성금모금 또는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5. 그 밖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사업자나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및 방송법령에 따라 고시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 ② 방송은 제1항 제2호의 안내·고지 자막 및 자사 프로그램 예고자막을 지나치게 크게 고지하거나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중계방송 등

- ①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경기장·행사장 등에 실제 설치된 광고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자는 협찬주 및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의 후원사(이하 “후원사”라 한다)와 관련되는 상품명 등을 반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는 후원사 명칭 등의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②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간접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5. 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난등에 대한 방송이나 긴급속보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하게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다만,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되거나, 운동경기(이와 관련된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계하는 장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운동경기의 경우 선수와 심판의 장비를 포함한다) 위에 노출하는 내용. 다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청객이나 관중 위에 노출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중요한 배경.소품, 자막 위에 노출하거나 이를 변형.왜곡시켜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5. 그 밖에 가상광고를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② 가상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가상이미지의 삽입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상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가상광고 자막은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가상광고 상품 등의 거래정보(가격, 구성, 위치.연락처, 행사기간 등 거래와 직접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이용 권유정보(품질.효능.기능.보증 등 구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업적 표현을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4. 출연자 등이 가상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실제로 시현하는 내용

5. 그 밖에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 가상광고가 출연자 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구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광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6.시상품

①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협찬주 또는 광고주 등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으로 사용하거나 시상명과 함께 방송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자가 주관·후원하거나, 사업자 이외의 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사업자가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가상광고주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

## 7. 상품판매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자. 방송언어

#### 1. 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 차. 기타

#### 1.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①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은 모집금액, 사용주체,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처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출연자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등 등록된 모집자가 아닌 자의 기부금품 접수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유료정보서비스

- ①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 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 중 이용된 유료정보서비스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자막 및 음성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생방송에 한하여 유료정보서비스가 이용된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는 그 이용 관련 자막이 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방송 등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

시사·보도·토론·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방송사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심의위원 협의체 운영

시청자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심의위원 협의체>를 통해 제작 계획을 합동 심의로 사전 진행한다. (심의위원 협의체는 부서책임자2명(편성기능, 제작기능)과 시청자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구성)